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공탁 기간 한정〉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67호)

2026.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5. 2.
3. 회 부 일: 2025. 5. 7.

II. 제안이유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음.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3년 2개월로 형량을 낮추어줬음. 재판부는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유족은 구형이 10년 나왔다는

것은 교제폭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리게 되었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되는 요소로 작용 되고 있음. 이러한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 가능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공탁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94조의5조제1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신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략) <신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피고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2. 개정안 검토

가. 현행 형사 공탁제도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로, 공탁법 제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요소인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¹⁾함(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 11. 선고 2022노163 판결).

<2025 양형기준 중 살인범죄 양형기준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6. 21. 선고 2023노25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2. 15. 선고 2022노1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노341 판결 등

	미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u>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사체유기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u>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u>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5를 2024년 10월 16일 신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의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경사유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부당한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형사공탁 가능 기간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금은 회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 참여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현행 형사법 내에 이미 입법 취지의 상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우선,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5²⁾을 신설(2024. 10. 16.)하여 형사 사건에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리고,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제1호³⁾에서는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 즉 형사피해자가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2026. 3. 30.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습공탁’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6. 양형기준에서 공탁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기습공탁’, ‘먹튀공탁’ 문제를 방지하도록 의결하였음.

2)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본조신설 2024. 10. 16.]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3. 30. 보도자료 중 발췌>

-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의 문제를 방지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대상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피고인이 사후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문 의 처

02)6788-5063